

인천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8나15(본소), 2018나22(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손해배상]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18. 3. 28

판결선 고 2018. 4. 11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가단14092(본소), 2017가단 21410(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3054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8,093,55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8, 093, 550원을지급하라.1)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반소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제2항) 이 도과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심승우 판사 이민호

1)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반소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함께 기재된 항소이유는 반소에 관한 내용이고, 하단에 '항소(반소) 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위와 같이 선행한다.